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1)

I. 조사 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2010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약칭: 원산지표시법)이 제정되어 가공식품과 음식점을 모두 시행중. 하지만 품목의 한계, 표시 기준의 허점과 처벌기준이 미흡함.
-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관해서 소비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함.
- 원산지표시제의 필요성·인식정도·표시확대여부 등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 소비자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함. 소비자 인식을 토대로 원산지표시제 강화를 촉구하고자 함.

2. 조사 기간 : 2015년 9월 1일 (화) ~ 9월 30일 (목)

3. 조사 대상 : 일반시민 390명

4. 조사 방법 : 서면 및 온라인

5. 조사 항목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의 확대 유무 의견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접근도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영향도

II. 조사 결과

1. [원산지표시제 필요여부] 원산지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98.5% (384명)로 나타남. 불필요하다 0.3% (1명), 잘 모르겠다 1.3% (5명)로 나타남.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합계
384명 (98.5%)	1명 (0.3%)	5명 (1.3%)	390명 (100%)

2. [원산지표시제 관심도] 원산지표시제를 식당에서 본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본적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97.9% (382명), 본적 없다는 응답자는 2.1% (8명)로 나타남.

본적 있다	본적 없다	합계
382명 (97.9%)	8명 (2.1%)	390명 (100%)

3. 가장 최근 이용한 식당에서의 원산지 확인 여부에서는 확인했다고 63.8%(249명)가 응답함. 확인안함 27.9% (109명), 잘모르겠다 8.2%(32명)로 응답함.

확인함	확인안함	잘 모르겠다	합계
249명 (63.8%)	1명 (0.3%)	5명 (1.3%)	390명 (100%)

4.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재료를 묻는 질문에는 소고기 80.5% (314명), 김치 63.8% (249명), 수산물 60.8% (237명), 돼지고기 55.9% (218명) 순으로 응답하였음. 다음 응답은 쌀, 기타(고춧가루, 소금 등), 닭고기 순으로 나타났음

(중복선택 가능)

수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쌀	기타	합계
237명 (60.8%)	314명 (80.5%)	218명 (55.9%)	123명 (31.5%)	249명 (63.8%)	173명 (44.4%)	125명 (32.1%)	390명 (100%)

5. [재료의 원산지가 메뉴선택에 미치는 영향] 원산지표시제를 보고 음식메뉴 변경 유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바꾼 적 있다 64.6% (251명), 바꾼 적 없다 30.8% (120명), 잘 모르겠다 4.9% (19명)이었음.

변경함	변경안함	잘 모르겠다	합계
251명 (64.6%)	120명 (30.8%)	19명 (4.9%)	390명 (100%)

6. [메뉴선택 시 고려사항] [메뉴선택 시 고려사항] 메뉴선택시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것은 메뉴의 맛 57.2% (223명)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두 번째로 고려하는 것은 메뉴의 가격 38.3%, (140명), 세 번째로 고려하는 것은 메뉴의 재료 41.4% (149명)

명) 네 번째는 재료의 원산지 39.4% (135명)로 순으로 응답하였음.

7. [원산지표시제 현행기준 평가] 현행 원산지 표시 대상에 대해서는 모든 품목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49.7% (194명), 품목이 확대되어야한다 42.6% (166명), 현행 품목으로도 충분하다 7.2% (28명), 현행 품목보다 축소해야 한다 0.5% (2명) 순으로 답하였음.

모든 품목 표시	품목 확대	현행 품목 유지	품목 축소	합계
194명 (49.7%)	166명(42.6%)	28명 (7.2%)	2명 (0.5%)	390명 (100%)

8. [음식점 이용 빈도] 한달 동안 외식 횟수

내 용	응답수	비율(%)
① 한달에 1회 정도	30	7.7
② 한달에 2회 정도	59	15.1
③ 1주일 1회 이하	76	19.5
④ 1주일 2회 이상 7회 이하 (하루 1끼 외식)	181	46.4
⑤ 1주일 8회 이상 14회 이하 (하루 2끼 외식)	39	10.0
⑥ 1주일 15회 이상 21회 이하 (하루 3끼 외식)	4	1.0
⑦ 기타	1	0.3
합 계	390	100

9.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적절한 위치] 현행 메뉴판, 게시판, 입구 등 선택하여 표시하게 되어있는 현행 제도에서 가장 적절한 위치는 메뉴판 62.6% (244명), 식당입구 25.4% (99명), 음식점 벽면 9.7% (38명), 기타 1.3% (5명)순으로 응답함.

메뉴판	식당입구	식탁	음식점 벽면	기타	합계
244명 (62.6%)	99명 (25.4%)	22명 (5.6%)	38명 (9.7%)	5명 (1.3%)	390명 (100%)

10. [응답자 기본정보]

○ 응답자 성별

남	여	합계
188명 (48.2%)	202명 (51.8%)	390명 (100%)

○ 응답자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기타	합계
76명 (19.5%)	66명 (16.9%)	115명 (29.5%)	106명 (27.2%)	21명 (5.4%)	2명 (0.5%)	4명 (1.0%)	390명 (100%)

○ 응답자 거주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상	전라	충청	제주	기타	합계
116명 (29.7%)	46명 (11.8%)	96명 (24.6%)	9명 (2.3%)	60명 (15.4%)	10명 (2.6%)	37명 (9.5%)	7명 (1.8%)	9명 (2.3%)	390명 (100%)

○ 응답자 결혼 유무

유	무	합계
265명 (67.9%)	125명 (32.1%)	390명 (100%)

○ 응답자 자녀 유무

유	무	합계
255명 (65.4%)	135명 (34.6%)	390명 (100%)

Ⅲ. 조사 결과에 따른 경실련 의견

1. 소비자 97.9% (384명)는 원산지표시제를 접한 적이 있음. 가장 최근 이용한 식당에서 원산지표시제를 확인한 소비자는 63.8%(249명)로 원산지표시제를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음. 또한 원산지 표시를 보고 음식메뉴를 바꾼 적이 있는 경우가 64.4%(251명)으로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표시제가 식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2.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대다수의 소비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필요하다 98.5% (384명) 답하였고, 원산지표시제 규정에 대해서는 모든 품목이 표시되어야 한다 49.7% (194명), 품목이 확대되어야 한다 42.6% (166명) 등 표시 대상품목이 현행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가장 적절한 원산지 표시 위치는 메뉴판이라고 62.6% (244명)가 답변하였다. 따라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원산지 표시를 위해서라도 원산지 표시의 현행 품목이 확대되고 규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3. 소비자가 음식 메뉴를 선택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순서는 음식의 맛, 가격, 재료, 원산지의 순서였음. 따라서 원산지표시제가 강화되면 메뉴 선택의 제한보다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 시키는데 더욱 의미가 있음.
4. 원산지표시제는 수입 농산물 홍수 시대의 우리 농업보호의 최소한의 안전선임. 더욱이 외식을 하루 1끼 정도 한다는 답변이 46.4%(181명)인 점을 보아 음식점의 재료가 현재 소비자의 식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됨. 소비자

는 먹거리의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원산지표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현행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경실련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향상 시키고, 먹거리에 대해 신뢰 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법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함.

5.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품목은 소고기, 김치 순으로 나타났음. 김치의 재료로 주요 사용되는 양념채소류(마늘, 양파, 건고추 등)에 대한 표시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뿐만 아니라 유지류(참기름, 들기름 등), 종실류(참깨, 들깨 등), 서류(감자 등)의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함께 확대되어야 함. 서술된 품목은 소비자가 쉽게 접하는 품목이며 우리나라 많은 농가들이 재배하는 품목으로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농가 소득 보존을 위해서라도 식재료에 주요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전면표시를 시행해야 함.

<끝>